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3404 |
|------|------|

2026.03.1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6일, 허훈 의원(찬성의원 16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6.3.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허훈 의원)

가. 제안이유

- K팝, K드라마와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의료,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연계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2.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가능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4조~제5조).
4.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7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한류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의료,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연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한류산업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입법 배경과 주요내용

- ‘한류’는 1990년대 말경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현재는 문화 콘텐츠 산업 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음식,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분야까지 연계되면서¹⁾ 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1) 예컨대 한국의 드라마를 본 외국인이 해당 드라마에 나온 의상, 화장법, 식문화, 가전제품, 자동차, 촬영지 등 일상의 진방위적 분야를 모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우리산업에 연계되는 것임.

한류의 구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 한류1.0 | 한류2.0 | 한류3.0 | 신한류(K-컬처) |
|------|---------------------|---------------------------|-------------------------|--------------------------|
| 시기 | 1997년~ 200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 2010년대 초반~ 2019년 | 2020년~ |
| 특징 | 한류의 태동 영상 콘텐츠 중심 | 한류의 확산 아이돌 스타 중심 | 한류의 세계화 세계적 스타 상품 등장 | 한류의 다양화 + 세계화(온라인 소통) |
| 핵심분야 | 드라마 | 대중음악 | 대중문화 | 한국문화 + 연관 산업 |
| 대상국가 | 아시아 | 아시아, 중남미, 중동, 구미주 일부 등 | 전 세계 | 전 세계(전략적 확산) |
| 소비자 | 소수 마니아 | 10~20대 | 전 세계인 | 전 세계인(맞춤형 접근) |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4 한류 생태계 연구’ (2025.01.)에 따르면 2024년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상품 수출은 80억 1,800만 달러, 소비재 및 관광 수출은 71억 6,500만 달러, 생산유발효과는 37조 6,195억원으로 조사됨.
- 이에 정부 차원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중요 정책과제로 논의되면서 개별법으로 산재한 한류산업 및 연관산업의 육성을 총괄할 수 있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됨(2024.10.22.).
- 그리고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된 같은 법은 한류와 한류산업의 개념을 명시하면서 관광상품, 농수산식품, 전통문화상품, 화장품 등의 제작·유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연관산업으로 정의하고²⁾, 지원과 육성의

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 되도록 이를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 또는 한류연관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

대상을 구체화하였음.

- 특히 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산업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별 정책 마련 및 재원 확보에 대한 책무(제4조), 전문인력 양성(제10조), 연구개발촉진(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제14조),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제15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제20조)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한류산업에 대한 부처별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류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한류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부터 콘텐츠 산업을 핵심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류 콘텐츠 기획, 제작, 해외 진출, 저작권 보호 등 전 주기를 지원하면서 300조원 규모의 시장 창출을 목표로 정책 금융과 K-컬처 체험존을 조성하는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서울시는 주로 뷰티·패션, 영상 및 문화콘텐츠, 관광·마이스 등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 각 실국별 담당 중인 ‘한류’ 관련 사업 목록 | | |
|-------------------------------|------------------------------|-------|
| 사업명 | 사업내용 | 담당 실국 |
| 서울뷰티위크 개최 | • K-뷰티 전시관·체험 및 유망기업 판로개척 지원 | 경제실 |

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 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 | | |
|---------------------|--|------------------|
| 서울패션위크 개최 | • 패션쇼·트레이드쇼 등 K-패션 브랜드 글로벌 홍보 및 비즈니스 성장기회 마련 | (뷰티패션산업과) |
| 엔터테크 서울개최 | • 콘텐츠(K-POP, 게임, XR 등)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문화 융·복합산업인 엔터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제공 | 경제실 (창조산업과) |
|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지원 | • 서울 로케이션 촬영 지원 및 해외 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 |
| K콘텐츠 관광활성화 | • 촬영지 정보제공, 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K콘텐츠 활용 관광 프로그램 지원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3. 조례안의 조문 검토

가.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한류 및 연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 |
|---------------|---|
|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
| 한류 및 연관산업의 육성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육성), 제7조(사무의 위탁),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포상) |

- 동 조례안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입법체계와 정의 규정을 참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는바, 입법 취지 및 내용적 측면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서울시장에게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 및 연관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원 확보 노력 책무를 규정한 것임.
- 동 규정은 같은 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반복되는 용어를 약칭할 경우에는 제1조 목적 규정을 제외한 조문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용어에 약칭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기술임.
- 그러나 동 조례안의 경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이라는 용어의 약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안 제3조에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약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 ----- ----- --- ② 제정안과 같음 |

다.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을 ‘한류산업등’으로 축약 사용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의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시민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축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조의 경우에는 ‘한류산업등’에 관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각 호별로 ‘한류산업등’을 반복적으로 표기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동 조례안은 안 제5조 조명을 제외한 부분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같은 조 각 호 중 예를 들어 제2호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같이 동의어를 중복하여 표기함으로써 오히려 조문의 간결성을 해치고 조문의 해독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안 제5조는 조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u>한류산업등 관련 분야</u> 전문인력의 양성 2. <u>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u> 연구개발 3. <u>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u> 4. <u>한류산업등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u> 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7. 그 밖에 <u>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u>전문인력의 양성</u> 2. <u>연구개발</u> 3. <u>지식재산권의 보호</u> 4. <u>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u> 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7.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이라는 용어의 약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안 제3조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약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각 호에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표기된 ‘한류산업등’을 삭제하며(안 제5조) 오탈자를 정비함(안 제9조).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장의 약칭을 명시함(안 제3조).
- 불필요하게 반복 사용되는 ‘한류산업등’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 오탈자를 정비함(안 제9조).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3404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이라는 용어의 약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안 제3조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약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각 호에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표기된 ‘한류산업등’을 삭제하며(안 제5조) 오탈자를 정비함(안 제9조).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장의 약칭을 명시함(안 제3조).
- 불필요하게 반복 사용되는 ‘한류산업등’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 오탈자를 정비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양성
2. 연구개발
3. 지식재산권의 보호
4.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9조 중 ‘한류사업등’ 을 ‘한류산업등’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 수 정 안 |
|---|--|
|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한류산업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u> 2. <u>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u> 3. <u>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u> 4. <u>한류산업등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u> 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7. <u>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제9조(포상) 시장은 <u>한류사업등의 진흥에</u>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 -----</p> <p>②(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문인력의 양성</u> 2. <u>연구개발</u> 3. <u>지식재산권의 보호</u> 4. <u>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u> 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7. <u>그 밖에</u>----- ----- <p>제9조(포상) 시장은 <u>한류산업등의</u> ----- ----- -----</p> |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양성

2. 연구개발

3. 지식재산권의 보호

4.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